

	가정통신문	담당부서: 교무부 전화번호: TEL: 021) 6493-9530 FAX: 021) 6493-9600 홈페이지: http://skoschool.com
中國 上海市 閔行區 華漕鎮 聯友路 355號 (郵)201107		

2022학년도 여름방학 안내(중등)

※ 방학 안내 사항

1. 여름방학 기간: 2022.07.13.(수)~08.25.(목) (44일간) 학교 오는 날 : 2022.08.26.(금) 정상수업 (1~7교시)
2. 학교 연락처: 대표 전화 6493-9500 / 대표 팩스 6493-9600/ 홈페이지: www.skoschool.com 담임 선생님 전화 번호: _____
3. 방과후 학교 운영 안내 가. 운영일정 1기 : 2022.07.18.(월)~07.29.(금), 2기 : 2022.08.01.(월)~08.12.(금) 나. 운영방법: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
4. 도서관 휴관 안내 가. 휴관 일시 : 2022.7.13(수)~8.25(목) 방학 중 방역지침에 따른 학교출입제한으로 휴관(추후 학교출입 정상화시 별도 이용 안내함) 나. 북레일 전자도서 이용안내 : www.bookrail.co.kr 소속기관 : 상해한국학교, 아이디 : skoschool1, 비밀번호 : skoschool1

※ 방학 중 안전생활

교통 안전	- 오토바이, 전동차 탑승 금지, 불법운행 자가용(黑车), 3륜차 탑승 금지
불건전 행위 금지	- 음주 흡연 절대 금지 , 특히 공원이나 아파트 등에서는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됨 - 상점 등에서의 절도 행위 금지 (해당 상점과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교칙에 따라 처벌)
단정한 용의 복장	- 방학 기간에도 본교 학생임을 명심하고 용의복장을 단정히 해야 함 - 개학일에는 용의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등교해야 함. (정정유예 기간없이 규정 적용) - 방학 중에 염색한 경우, 개학일에 맞춰 검은색으로 염색한다고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붉은색으로 변색됨. 이런 경우에도 정정 염색을 반복해야 하며, 이 경우 머릿결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이 있는바 모든 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함.
긴급 상황 시 연락처	· 주상하이총영사관 대표전화(근무시간 중) : (86)21-6295-5000 긴급연락전화(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, 24시간) : (86)138-1650-9503(4)

* 학생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더 안전하고 보람 있는 방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.

※ 방학 중 한국 입국 관련 유의 사항

뒷면의 재외국민 특별전형(2% 이내) 표준화 지원 자격 안내를 참고하여 추후 지원 자격 미달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재외국민 특별전형(2% 이내) 표준화 지원 자격 안내

○ 재외국민 및 외국인(2% 이내) 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 제2항 제2호)

구분	내용
국외근무자	역년으로 통산 3년(1,095일) 이상의 국외근무/사업/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
국외근무자의 자녀	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(1,095일)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/사업/영업 하는 기간 동안,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 (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)을 포함하여 중·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
국외재학기간	•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: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(약 365일)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.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•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: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(약 365일)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
국외체류일수 조건	•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: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(약 365일)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 마다 학생 본인은 3/4 이상을, 국외근무/사업/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/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•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: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(약 365일)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/4 이상을, 국외근무/사업/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/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• 체류일수 산정 시, 소수점 절사

○ 제출서류

※ 대학별 추가 서류는 대학자율로 결정

구분	제출서류
재외국민 및 외국인 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 제2항 제2호)	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초·중·고 재학증명서 초·중·고 성적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- 가족관계증명서(학생기준) - 출입국사실증명서(부, 모, 학생) -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(부, 모, 학생) - 여권 사본(부, 모, 학생) - 재외국민등록부 등본(부, 모, 학생) -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(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) -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) -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(현지 취업자 제출서류) -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(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)
전 교과과정 이수자 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 제2항 제2호)	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- 초·중·고 재학증명서 - 초·중·고 성적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- 출입국사실증명서(학생) -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(학생) - 여권 사본(학생)

상 해 한 국 학 교 장